

제4기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 CONTENTS



## 제4기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해당 자료는 '21~'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 '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9건)

- 다년도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변경 시 연구 수당 변경 계상 방안 마련
-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위한 장비 구비 요건 합리화
- 전주시 표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규격 확대
- VR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 보조금 제도 마련
- 융복합제품의 구매 방식 개편
-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제어
- 화물자동차 임대 및 중개사업 허용 방안 마련
- 자동팽창식 1인 구멍 뚫목이 보관된 가방 일체형 구멍조끼에 대한 기준 마련

# 다년도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변경 시 연구 수당 변경 계상 방안 마련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다년도 협약과제 진행 중 추가적 과업의 필요로 인해 사업비 총액이 증가된 경우,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인건비가 증액될지라도, 연구수당 총액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 애로사항 발생

## 건의결과



다년도 협약과제 진행 중 총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연구수당의 총액을 증액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2.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선/파급효과



- 다년도 국가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연구열의 고취
- 질 높은 결과물 산출



#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세척과정에서 인쇄 잉크의 분리가 가능함에도 페트병 몸체에 직접 인쇄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페트병은 무조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으로 판정되어, 폐기물 관련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 발생

## 건의결과



실증시험 실시 후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이 조정\*되도록 관련 고시 개정

\* 재활용 어려움 -> 재활용 최우수/우수

\* 실증시험 실시(~'23.12) 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 예정(~'24.12)

소관부처: 환경부

## 개선/파급효과



- 재활용 잉크로 인쇄 시 제품의 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
- 재활용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수 및 인건비 29%~40% 감소 예상
- 납부하는 총 EPR 분담금 금액 감소
- 인쇄용 잉크 수입 대체 효과 기대
- 추가적인 폐기물 발생 저감



# 알루미늄 벤치 '직접생산 확인' 등록을 위한 생산시설 요건 합리화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알루미늄 벤치 제작 과정에서는 '자동대패'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해당 생산시설을 구비해야함에 따라,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

## 건의결과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자동대패(고정식)'을 '자동대패'로 개선하여, 기업에서 구비해야하는 장비 비용 부담을 완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179. 옥외용벤치 개정('21.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선/파급효과



- 생산공정 상 불필요한 생산설비 구매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 최고가 기준 구매비용 약 75% 감소(200만원 → 50만원)

# 전주시 표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규격 확대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제품은 컨버터 수명이 개선되어 기존대비 고효율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AC직결형 제품을 납품하지 못함

## 건의결과



전주시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대한 취지를 검토하고, 표준안을 개선하여 AC직결형 제품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전주시 표준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규격(전주시공고) 중장기 검토 및 개정 예정(~'23)

소관부처: 전주시

## 개선/파급효과



- 장수명 고효율의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설치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약 효과
- 광효율 기준 15% 개선(100lm/W → 115lm/W)
- 역률 기준 약 0.03 개선

# VR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 보조금 제도 마련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VR산업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발전해야 하는 산업이나, 현재 VR체험을 특정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가정 혹은 중소기업에서는 VR 장비 구입에 부담이 있어, 대중화에 어려움

## 건의결과



정부에서 VR기술 기반의 체험 및 소통이 필요한 기업,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업 및 가정에서 관련 장비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마련

\* 활용 가능한 산업융합 XR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활용 정도,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 및 대응 예정

# 융복합제품의 구매 방식 개편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융복합 혁신제품으로 지정 되어 테스트를 희망하는 기관이 존재하나, 제품 구성요소가 상이해 테스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

## 건의결과



테스트 구매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설비나 장비에 해당되도록 지원하여

- ① 시범구매대상에 포함하거나 옵션 대상으로 인정하고,
- ② 중복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 현황 안내('21.6)

\* 조달사업법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제어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기술적으로 건설 로봇은 원격제어를 통해 건설 현장 등에서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안전성 우려로, 상용화 및 서비스의 어려움 발생

## 건의결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49조의 10에 이미 무선원격제어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규격(자체중량 등)에 적합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원격제어 건설기계도 조종이 가능하므로 원격조종사 면허 또는 교육이수증 발급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유권해석(‘21.3)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임대 및 중개사업 허용 방안 마련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개인 화물자동차의 임대 및 중개 형태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대차서비스 사업화에 어려움 발생

## 건의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과의 관계, 임대 차량의 사고, 반납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및 업계관계자 등과의 논의 후, 차량 임대 및 중개사업을 화물운수업종으로 신설 하도록 제도에 반영

\* 화물운송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업계관계자 등과 논의 후 임대 및 중개사업 업종 신설 추진여부검토(~’23.9)

## 개선/파급효과



- 화물자동차 임차인과 임대인 간 매칭을 통해 임대인은 휴차 시 추가 수익 창출을, 임차인은 기존 보유 차량 고장 시 화물차 운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유휴 화물차량에 대한 공유경제를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고정비 절감 및 고용창출 규모 확대에 기여
- 화물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국내 물류시스템 강화 등 우리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자동팽창식 1인 구명 뗏목이 보관된 가방 일체형 구명조끼에 대한 기준 마련

기타 융합신산업 분야

## 애로내용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라 구명보트의 정원은 6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휴대성이 떨어지는 기존 구명보트의 단점을 개선한 1인용 구명보트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결과



「선박안전법」 및 「선박 구명설비기준」에서 규정한 구명뗏목은 풍랑·비바람 등 거친 해상에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풍우밀 덮개, 부력 및 복원성, 안전·내구 설계, 무선설비 설치공간 등의)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함. 제안 장비는 선박용 법정 구명설비로써 사용되기 어렵고, 레저용도 등으로 필요시 자율적으로 구입·활용되어야 할 장비로 판단됨

\* 선박안전법 제26조,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7조 및 제21조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참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서는  
융합·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670-9050" / "hyelim0507@kitech.re.kr"으로 문의  
또는 <https://www.oico.kr/>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